

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5-20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	2005. 4. 21
발의자	정화석 의원 외 6인

개정사유

-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1차 또는 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개정함.
 - 현행 “매년 1차 정례회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1차 또는 2차 정례회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2조제2항)

개정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6조
- 「지방자치법」 시행령 제19조의2

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“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”를 “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”을 「지방자치법」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매년 1차 정례회”를 “매년 정례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</u>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<u>거창군의회</u>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와 행정사무조사(이하 “조사라 한다)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감사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감사는 <u>매년 1차 정례회</u>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나 감사특별위원회(이하 “감사위원회”라 한다)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.</p> <p>③~⑤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----- ----- ----- --</p> <p>제2조(감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매년</u>----- 정례회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~⑤ (현행과 같음)</p>